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REDACTED] 공사대금

원 고 [REDACTED]

송달장소 [REDACTE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

담당변호사 최철호

피 고 [REDACTED]

변 론 종 결

2021. 12. 21.

판 결 선 고

2022. 5. 2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8,015,723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3.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공사 하도급계약에 따른 하도급공사대금 124,486,937원 합계 196,529,223원에서, 피고로부터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98,513,500원을 뺀 나머지 98,015,723원을 청구하고 있다. 각 공사별로 나누어 살펴본다.

2. 판단

가.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금원의 내역

편의상 우선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위 '98,513,500원'의 구체적인 내역을 본다. 갑 제9호증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계좌로 다음 표와 같이 위 돈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순번	송금일	송금액(원)
1	2020. 3. 17.	10,000,000원
2	2020. 4. 24.	5,000,000원
3	2020. 6. 22.	13,513,500원
4	2020. 9. 16.	50,000,000원
5	2020. 10. 20.	10,000,000원
6	2020. 12. 31.	10,000,000원
합계		98,513,500원

원고가 2018년 초경 피고로부터 하도급받았고, 2020. 3. 9. 기준 피고의 미지급 하도급공사대금이 72,042,286원인 사실은 피고도 다툼이 없으며(피고의 2021. 11. 8.자 준비서면 제3면), 갑 제7호증에 의해서도 인정된다.

그런데 갑 제7, 9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위 기준일 이후 위 가.항 표 순번 1, 2번과 같이 2020. 3. 17.자 1,000만 원, 2020. 4. 24.자 500만 원 합계

정된다.

72,042,286원 - 15,000,000원)임이 계산상 명백하다.

1) 인정사실

갑 제1, 2, 6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는 주식회사로부터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를 도급받았다. 원고는 2020. 3. 27. 피고와 사이에, 위 신축공사 중 중 토목공사 및 부대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

라 한다)를 원고가 피고로부터 하도급받는 내용의 하도급공사계약(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사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고, 원고는 위 계약 체결 직후부터 공사를 착공하였다.

5. 약정금액: 730,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7. 대금의 지급

가. 선금금: 없음

나. 기성금: 월1회 매월 말(25일~31일) 청구 후 60일 이내 현금지급 또는 “갑”사(피고)

② 또 원고는 2020. 6. 10.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해 피고에게 납품하는 토목자재에 대하여 별도로 납품계약(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납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납품계약상 납품된 자재의 대금 등과 관련한 조항은 다음과 같다(아래의 “갑”은 피고, “을”은 원고를 가리킨다)

4. 물품 및 정산: 협의된 단가로 토목자재를 납품함에 있어 송장에 의거하여 납품 당월 말 일자로 세금계산서를 마감하고, “갑”의 요청으로 이상이 있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10일 내에 합의하여 수정 발행한다. 매월마다 발행되는 세금계산서 금액을 최종 대금결제 금액으로 “갑”과 “을”은 약속한다. 단, 결제금액과 추가 물량에 대해서는 송장/전자세금계산서에 의해 결정하여 결제한다.

6. 대금 결제 조건: 매월 세금계산서 발행 후 익월말 현금

③ 원고는 2020. 7.경 이 사건 공사를 중단·타절하였다.

④ 이 사건 건물은 2021. 3. 9. 소유권보존등기가 종료되었다.

2)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 원고는 2020. 7.경 이 사건 공사의 타절 당시 피고의

미지급 기성금액이 124,486,937원이고, ㉔ 그 후 피고로부터 위 가.항 표 순번 3 내지 6번 합계 83,513,500원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면서 나머지 40,973,437원을 청구하고 있다.

나) 먼저 위 ㉑ 주장을 살펴본다. 갑 제8호증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다음과 같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내역			피고의 지급내역 (위 가.항 표 순번 3~6번)
작성일	합계금액 (공급가액+부가가치세액)	품목	
2020. 4. 25.	13,513,500원	자재대금	2020. 6. 22.자 13,513,500원
2020. 5. 31.	22,254,320원	부대토목공사	2020. 9. 16.부터 2020. 12. 31.까지: 70,000,000원
2020. 6. 30.	75,711,152원	부대토목공사	
2020. 8. 16.	13,007,965원	부대토목공사	
합계	124,486,937원		83,513,500원

이에 비추어 보면, 그중 품목명이 '자재대금'인 2020. 4. 25.자 13,513,5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는 이 사건 공사계약이 아니라, 원·피고 사이에 별도로 체결된 이 사건 납품계약에 따라 원고가 납품한 자재에 관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위 가.항 표 순번 3번과 같이 피고는 2022. 6. 22. 원고에게 위 13,513,500원을 송금함으로써, 이 부분 자재 납품대금은 지급이 이루어졌음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나머지 2020. 5. 31.자, 2020. 6. 30.자 및 2020. 8. 16.자 각 전자세금계산서 합계 110,973,437원이 원고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청구하고 있는 기성금액에 해당하는데, 갑 제4호증에 따르면 위 전자세금계산서상의 각 합계금액은 각각 2020. 5. 말, 2020. 6. 말 및 2020. 7.경 타절 당시를 기준으로 한 각 기간별 기성금액에 해당함이 인정된다. 그리고 피고는 위 가.항 표 순번 4 내지 6번과 같이

2020. 9. 16.부터 2020. 12. 31.까지 합계 70,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다) 그리고 이로써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공사계약은 공사대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월 1회 매월 말(25일~31일) 청구 후 60일 이내 현금지급 또는 피고의 기성수령 후 10일 이내에 현금지급'으로 정하고 있는바, 위 2020. 5. 31.자 및 2020. 6. 30.자 전자세금계산서는 위 계약 조항에 따라 원고가 당시 피고에게 매월 말에 청구한 기성금으로 보이고, 그 기성금의 내역도 신빙성이 인정되는 원고 작성 기성내역서인 갑 제4호증과도 어긋나는 부분이 없는 점, 그런데 피고는 2020. 6. 22. 이 사건 납품계약에 따른 자재대금 13,513,500원만을 원고에게 지급하였을 뿐, 2020. 7.경 당시를 기준으로, 이 사건 공사계약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원고로부터 2020. 5. 31.자(22,254,320원) 및 2020. 6. 30.자(75,711,152원) 전자세금계산서로 청구받은 기성금 합계 97,965,472원은 물론, [REDACTED] 하도급공사대금 57,042,286원조차 원고에게 전혀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던바, 피고의 공사대금 미지급이 2020. 7.경 원고의 이 사건 공사 타절·중단의 원인이라는 원고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는 점, 피고는 원고가 작성·발행한 기성내역서(갑 제4호증)와 위 각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한 바 없이 2020. 9. 16.부터 2020. 12. 31.까지 이 사건 공사 기성금으로 70,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20. 7.경 타절된 이 사건 공사계약과 관련한 피고의 현재 미지급 기성금은 40,973,437원(= 110,973,437원 - 기지급액 70,000,000원)임이 인정되고, 이에 어긋나는 피고 작성의 2021. 1. 28.자 타절정산내역서(을 제3호증)는 믿을 수 없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가 구하는 위 기성금액에는 노무비

'47,326,600원'이 포함되어 있음을 전제로, 피고는 원고의 인부들에게 위 노무비를 직접 지급하였으므로 그 상당액만큼 원고의 기성금 채권은 변제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2020. 7.경 이 사건 공사 타절 시까지 원고가 작성한 기성내역서인 갑 제4호증을 보면 원고가 2020. 5. 31.부터 2020. 8. 16.까지 매월 전자세금계산서로 피고에게 청구한 각 기성금 합계 '110,973,437원'은 노무비가 제외되어 있는 금액인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피고가 작성한 을 제2호증의 내역서를 통해서도 분명히 알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원고가 수행한 이 사건 공사에는 우수각형맨홀, U형 측구, 집수정 등의 미시공 내역이 있고, 피고는 '64,095,900원'을 들여 이를 시공하였다고 주장한다 (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항변의 취지로 보인다). 그러나 을 제5호증만으로는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미시공 내역과 규모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사계약은 공사대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월 1회 매월 말(25일~31일) 청구 후 60일 이내 현금지급 또는 피고의 기성수령 후 10일 이내에 현금지급'으로 정하고 있는 점, 원고는 2020. 7.경 이 사건 공사계약을 타절하고 그때까지의 원고 작성의 매월별 기성내역서에 기초하여 2020. 5. 31.부터 2020. 8. 16.까지 발행한 합계 '110,973,437원'의 전자세금계산서로 각 기성금을 청구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한 바 없이 2020. 9. 16.부터 2020. 12. 31.까지 이 사건 공사 기성금으로 70,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피고는 2020. 7.경 타절 당시 그때까지의 기성고를 매번 확인하고 그에 따른 기성금액을 '110,973,437원'으로 정산·합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라. 소결론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98,015,723원(= [REDACTED] 미지급 공사대금 57,042,286원 + 이 사건 공사의 미지급 기성금 40,973,437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 다음 날인 2021. 3.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REDACTED]

정본입니다.

2022. 5.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법원주서

판결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이 정본을 송달받은 날(발송송달의 경우에는 발송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상소장을 민사소송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원심법원인 이 법원(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71조의 보조참가인의 경우에는 피참가인을 기준으로 상소기간을 계산함에 유의).